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52797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10. 7.

판결 선고 2015. 10.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859,031원 및 그 중 389,241,218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3. 12.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3. 12. 24. 접수 제833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A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859,031원 및 그 중 389,241,218원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0. 6.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475,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1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후 보증금액을 384,746,771원, 보증기한을 2015. 6. 12.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위 약정에 기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해주었으며, 피고 회사는 같은 달 22.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427,496,410원의 B2B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등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에게 보증금액을 사전상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과 그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율은 2012. 12. 1. 이후 연 12%이다.

3)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피고 회사는 2014. 9. 13.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12. 31. 원고가 국민은행에 392,991,8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같은 날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5,082,91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 1,332,300원과 대위변제금 3,750,610원을 회수하였고 이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233원이다.

3) 한편 원고가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잔액은 1,616,580원이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피고 B은 2013. 12. 24. 그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채무자를 피고 B으로, 채권최고액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83324호로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의 무자력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채무 외에 복시흥농업협동조합, 국민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채무 등 위 적극재산의 가치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859,031원[= 원금 389,241,218원(= 392,991,828원 - 3,750,610원) + 확정지연손해금 1,233원 + 채권보전조치비용 1,616,580원] 및 그 중 원금 389,241,21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2. 3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5. 8. 2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인정 범위 내로 제한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피고 B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결정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 B이 피고 C 외에도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평소 알고 지내던 채권자 중 1인인 피고 C에게만 담보로 제공하여 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계약 체결 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에게 사해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 C의 위 주장에는 자신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사해 의사가 없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9090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3. 12. 24.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차문호

판사송미경

판사김국식

별지